

보도시점 2023. 10. 19.(목) 10:00 (2023. 10. 19.(목) 석간)

근로자는 모성보호제도 사용, 사업주는 인재채움뱅크로 인재 활용

- 10.19.(목)~11.17.(금) '24년도 「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운영기관」 공모 -

고용노동부(장관 이정식)는 10월 19일(목)부터 11월 17일(금)까지 한 달간 「2024년도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운영기관」 공모한다고 밝혔다.

「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」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, 육아휴직, 육아기근로 시간단축 등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업무를 대신할 인재를 채용하려는 기업을 지원하는 채용알선서비스이다.

내년에는 대체인력 전문알선기관인 「인재채움뱅크*」를 확대하면서, 「인재채움(대체인력) 일자리 전용관」 사업을 신설하고, 관련 예산도 '23년 14.4억원에서 '24년 30억원(정부안 기준)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.

* (명칭변경) 내년부터 위탁운영기관 및 사업 명칭을 '대체인력뱅크'에서 '인재채움뱅크'로 변경

공모는 ①「인재채움뱅크」 운영기관 공모와, ②「인재채움(대체인력) 일자리 전용관」 운영기관 공모로 나누어 진행된다.

「인재채움뱅크」는 대체인력일자리에 대해 직접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, '23년 3개소를 운영하였으나 '24년에는 5개소*를 선정하여 더욱 촘촘한 채용알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.

* ①서울 ②경기 ③경상 ④전라(제주 포함) ⑤강원, 충청

「인재채움(대체인력) 일자리 전용관」은 인지도가 높은 대형 민간취업포털에 대체인력 일자리 전용공간을 설치하여 구직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일자리 정보 제공 서비스로서 3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.

이정환 고용정책실장은 “내년부터 6+6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으로 모성 보호제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 제도를 보다 강화하고자 한다.”라고 하며,

“대체인력지원금 등 비용지원과 함께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워하는 기업에 대한 채용지원서비스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모성보호제도 활용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.”라고 강조했다.

담당 부서	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범석 (044-202-7470) 직무대리
		담당자	사무관 전연진 (044-202-7477)

대한민국
지책브리핑



□ 사업목적

- 출산휴가, 육아휴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적시에 보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부담경감 및 근로자의 일·가정 양립 지원

□ 사업내용

- (인재채움뱅크)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재채움 수요 발생 시 기업에게는 적시에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고, 구직자에게는 경력 및 희망직종을 고려한 취업알선 및 기초 소양·직무 교육 제공

* 연도별 지원실적(명): ('18) 3,192→('19) 3,218→('20) 3,755→('21) 3,965→('22) 4,215

- '23년 3개소에서 '24년 5개소로 확대하여 알선서비스 강화 예정

- (인재채움(대체인력) 전용관) 대국민 인지도가 높은 대형 민간취업 지원기관의 포털 사이트에 대체인력 일자리 전용 채용관* 마련

* 전용관은 인재채움뱅크와 별도로 운영하여 대체인력 일자리 접근 경로 다양화

□ 소요 예산

- '23년 14.4억원 → '24년 30.0억원(정부안 기준)

① 육아휴직 지원금

- (대상)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
- (기간) 육아휴직 부여 기간 동안 지원(최대 1년)
- (내용)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(특례* 3개월 동안 월 200만원)

* 만 12개월 이내(임신 중 포함), 3개월 이상 연속 부여시 첫 3개월 월 200만원, 이후 월 30만원

구분	1개월 지급액		연간총액
	첫 3개월	이후 9개월	
기본	30만원		360만원
특례	200만원	30만원	870만원

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

- (대상)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
- (기간)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기간 동안 지원(최대 2년)
- (내용)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(사업장별 1~3번째 사례 월 40만원)

구분	1개월 지급액	연간총액
기본	30만원	360만원
인센티브(사업장별 1~3번째)	40만원	480만원

③ 대체인력지원금

- (대상) 출산전후휴가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,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
- (기간)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(인수인계기간 최대 2개월 포함)
- (내용)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(인수인계 2개월, 월 120만원)

④ 대체인력 채용 알선

- 출산전후휴가, 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공백을 적시에 보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 제공